

ISSUE BRIEFING

2020. 08. 10
Vol. 227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김동영_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박정민_전북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전북의 마한 권역을 포함하자!

CONTENTS

1. 역사문화권 특별법의 제정과 내용 3
2. 전북의 마한역사문화권 지정의 역사적 근거 5
3. 역사문화권 특별법 개정 및 향후대응전략 8

요약

- 2020년 5월 20일에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문화권으로 구분. 전북은 백제와 가야 문화권에 포함되지만, 마한 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전남만 포함
- 이 법이 시행된다면 전북 지역의 마한사 연구 및 발굴, 복원 등은 사멸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법 개정 필요
- 전북 지역은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마한이 존재. 특히, 익산 금마 지역은 고조선 준왕이 망명하여 마한 세력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고고학과 역사적 사료들이 많음
- 최근 전북혁신도시 일대의 개발로 만경강 유역에서 각종 고고학 유적이 발굴되며 황방산 일대도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제기. 이후에도 전북 서부 지역은 마한의 중심지
- 고창 봉덕리 유적을 비롯한 전북의 서남부권은 영산강 유역과 함께 후기 마한의 거점지
- 이처럼 마한사의 전개 과정에서 전북은 시작과 끝까지 중심지 역할을 한 핵심지역이므로 마한역사권에서 빠질 수 없음
- 전북도는 역사문화권 특별법 시행 전에 개정을 추진하여 학계의 합의를 토대로 마한 권역 포함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제시해야 함
- 전북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역사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법 시행 이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함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역사문화권역에서 고구려만 포함된 강원도와 연계하여 후삼국 시대의 후백제·태봉 역사권역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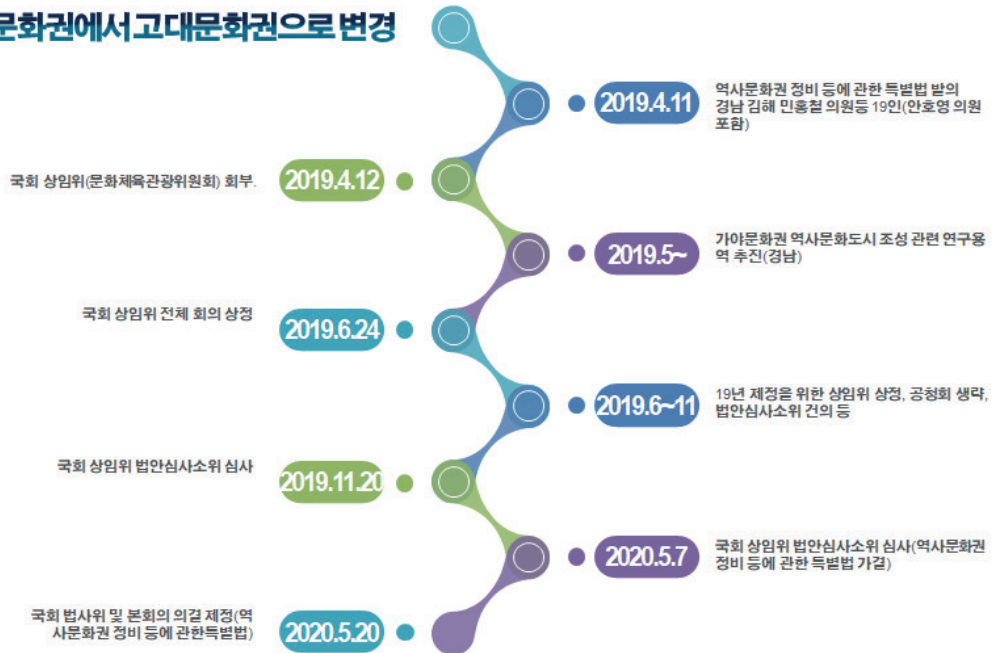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전북의 마한 권역을 포함하자!

1. 역사문화 특별법의 제정과 내용

◎ 제정 과정

- 20대 국회에서 각 문화권에 관한 역사문화 특별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부결
 - 민홍철 의원 :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2017)
 - 정종섭 의원 :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2018)
 - 위성곤 의원 :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안』(2018)
- 민홍철 의원을 중심으로 가야문화권에서 고대문화권으로 변경하고 전국 단위로 지역 확장
 - 2019년 4월 11일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020년 5월 20일에 본회의 의결 제정

가야문화권에서 고대문화권으로 변경



〈그림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 과정

◎ 특별법 주요 내용¹⁾

• 목적(1조)

-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참조하여 작성

• 정의(2조)

- 역사문화권의 범위를 문헌 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6개 권역으로 구분
- 고구려(서울·경기·충북), 백제(서울·경기·충청·전북), 신라(경북), 가야(경남·경북·부산·전남·전북), 마한(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탐라(제주)
- ※ 전북은 백제와 가야문화권에 포함

•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지정(14조)

-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실시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함

• 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24.25.27.2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과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 및 기반조성

◎ 쟁점

- 마한의 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의 전남 지역만 구성하면 기원전 3세기 ~ 기원후 5세기까지 마한의 역사에 대한 연구 및 복원 등은 난항을 겪을 우려
- 이 법이 시행된다면 마한의 시작과 전성기를 함께한 전북 지역의 마한사 연구 및 복원 등은 사멸될 위험에 처함
- 따라서 마한의 중요 거점이었던 전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6개 역사문화권에 포함되지 못한 후백제와 태봉 등 후삼국도 법 개정시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전북의 마한 권역을 포함하자!

2. 전북의 마한역사문화권 지정의 역사적 근거

◎ 마한의 역사와 공간적 범위

- 마한(馬韓)은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진한(辰韓)·변한(弁韓)과 함께 삼한(三韓)을 구성하였던 종족 혹은 정치체
-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지만 대체로 기원전 3세기 말 무렵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까지, 경기·충청·전라 지역을 포괄.²⁾ 가장 최근 연구 성과를 보면 <표 1>과 같음

<표 1> 마한의 시공간적 전개과정³⁾

단계		시간	주요 공간
조기	전반	기원전 3세기 말 ~ 기원 전후	만경강, 금강 중하류 일대
	후반		영산강, 서남해안 일대
전기	전반	기원 후 1세기 ~ 3세기 중반	서울·인천·경기 남부, 천안·아산 일대
	후반		서울·인천·경기 남부, 충청, 전라 일대
중기		3세기 중반 ~ 4세기 중후반	인천·경기 일부, 충청, 전라 일대
후기		4세기 후반 ~ 6세기 전후	고창과 영산강 일대

- 마한은 54개의 부족국가 연맹체를 이루었는데, 백제가 그 중 하나
-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백제가 주변의 마한 세력을 병합
 - 1~3세기에 서울·경기, 3~4세기에 충청, 4~5세기에 전북, 5~6세기에 전남으로 점차 영역 확대
 - 6세기 중엽에 전남 지역까지 백제에 편입되며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
 - 마한과 백제의 관계는 대나무와 죽순의 관계로 표현될 정도로 긴밀하여 분리할 수 없음
- 마한에 대한 기록 자체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충청·전라 지역에서 각종 고고학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며 그 역사상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마한의 중심지 전북

• 마한의 시작점

-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한(韓) 혹은 마한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기원전 198년에 위만에게 나라를 뺏긴 고조선의 준왕이 남쪽으로 망명하였으며 이곳이 지금의 익산 금마 일대

2) 고고학 학계에서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 마한의 문화권을 크게 ①한강유역권, ②아산만권, ③금강유역권, ④영산강유역권, ⑤남해안권으로 구분하고 있다.(임영진,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과정-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3, 2010)

3) 김승옥, 「호남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상호관계」, 『호남고고학보』 63, 2019, 9쪽. <표 1> 마한의 시공간적 전개과정을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관학자, 실학자(한백경, 안정복, 정약용) 등도 익산을 준왕이 온 곳으로 마한의 도읍지라며 마한 역사의 시작점으로 인식

<사료 1> 『후한서』 권 35, 「위지」 동이열전 75

- 처음에 (고)조선왕 준(準)이 위만에게 격파되었을 때, 곧 남은 무리 수 천명을 이끌고 바다로 달아나 마한을 공격하여 깨트리고 스스로 한왕이 되었다.

<사료 2> 『삼국지』 권 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30

- (조선)후 준(準)이 왕을 참칭하다가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衛滿)에게 공격을 받아 (왕위를) 뺏겼다. ... (중략)... (준왕은) 좌우 (측근과) 궁인들을 거느리고 도망쳐 바다를 경유하여 한(韓)의 땅에 거처하면서 스스로 한왕(韓王)이라 불렀다.

<사료 3> 『제왕운기』 권 하, 「후조선기」

- 준이 금마군으로 옮겨 살면서 도움을 세우고 다시 임금이 되었다.

<사료 4> 『동국통감』 「외기」 삼한(마한)

- 권근(權近)이 말하기를, "조선왕 기준(箕準)이 위만(衛滿)의 난을 피하여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가서 개국(開國)하여 마한(馬韓)이라 불렀으며, 백제(百濟) 온조(溫祚)가 즉위함에 이르러 드디어 그를 병합하였다. 지금 익주(益州; 익산)에는 고성(古城)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준성(箕準城)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마한이 백제가 된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후략)"

<사료 5> 『동사강목』 부록 하, 「삼한고」

- 마한은 금마군(金馬郡)에 도읍하였는데, 금마군은 지금의 익산(益川)이니, 이것은 양호(兩湖; 호서(湖西)·호남(湖南))가 마한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 마한 세력의 중심지⁴⁾

- 최근 만경강 유역의 전북 혁신도시 일대에서 대형 군집묘(群集墓) 등 각종 유물과 유구가 발견되어 상당한 규모의 인구 밀집이 입증되며 일찍부터 황방산 일대가 중심지였을 가능성 제기
- 준왕 세력이 자리 잡은 지역을 익산과 황방산 일대 등으로 바라보는 학설이 있지만, 사료와 유물·유적을 통해 크게 전북의 서북부 지역이 그 중심부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 아울러 이 시기에 육로와 해로를 통해 중국-마한-변한과 진한-왜로 연결되는 국제 교역망 형성. 만경강과 영산강 일대는 그 증거인 철기, 푸른 유리구슬, 중국산 동경 등이 집중적으로 발견
- 이후 전기와 중기에도 전북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마한 문화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백제의 지배 아래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 4세기 중반에도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율성을 누린 것으로 보임
- 치열한 논란이 있지만, 삼국지에 보이는 54개 마한 소국 가운데 감해국(익산), 벽비리국(김제), 모로비리국(고창)의 3개는 견해가 일치.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지만 통상 11~12개의 국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⁵⁾, 유적과 유물은 <그림 2>⁶⁾ 과 같이 전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발견

4) 최완규, 「마한성립의 고고학적 일고찰」, 『한국고대사연구』 79, 2015; 김승욱, 앞의 논문, 20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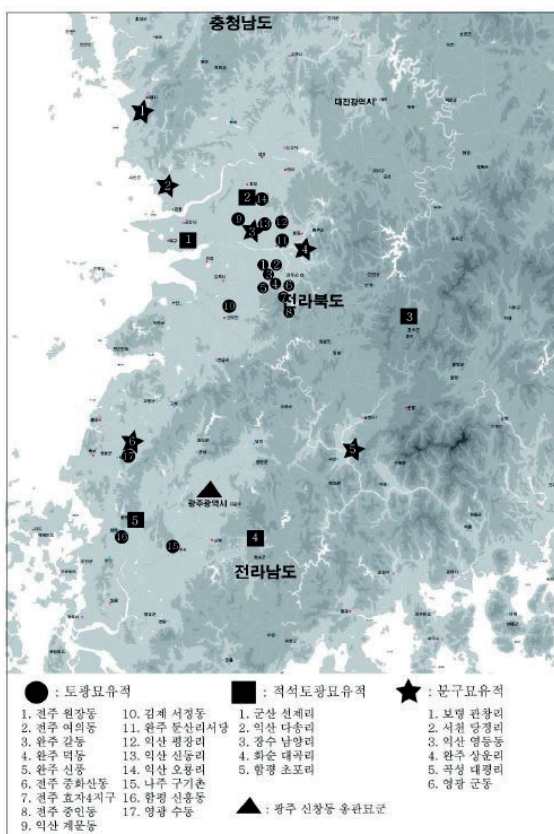
5) 김병남, 「백제의 '전북지역' 진출 과정과 추이 변화」, 『전북사학』 85, 2020, 120~122쪽

6) <그림 2>과 <그림 3>는 각각 「익산지역 마한 풍속의 지역전략화 조사연구」의 '도면 1. 마한 분묘 성립기·공백기 유적분포도', '도면 2. 마한 분묘 성형기·쇠퇴기 대표 유적 분포도'를 인용하였음.(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앞의 보고서, 2018, 41쪽; 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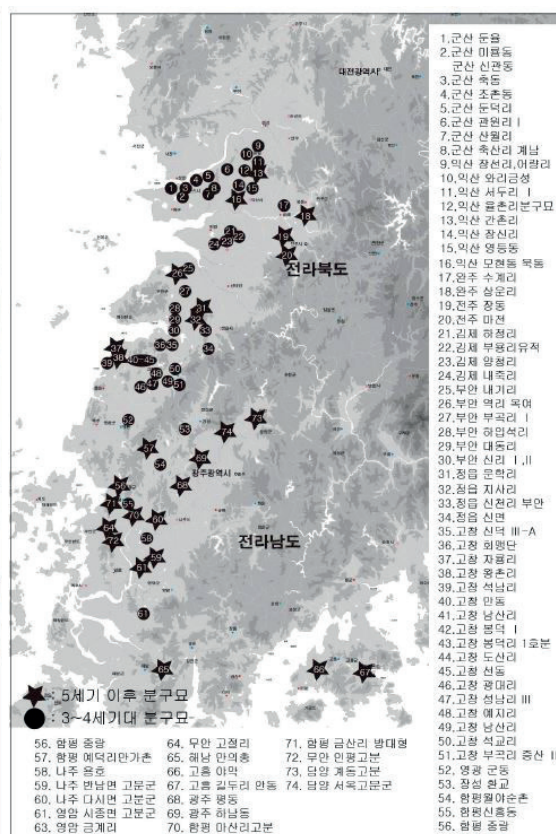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전북의 마한 권역을 포함하자!

• 후기 마한의 거점지

-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나주 일대는 6세기 중엽에 백제에 완전히 병합되며 마한은 역사의 뒀안길로 소멸
- 영산강 유역은 웅관(甕棺)과 일본식 장고분(長鼓墳; 전방후원분), 나주 출토 금동관과 금동신발 등이 출토되며 기존의 마한과 다른 결의 문화를 보이고 있음
- 이 시기 유적과 유물은 <그림 3>와 같이 전라남북도 전역에서 발견. 특히, 줄포만권으로 대표되는 고창 봉덕리 유적은 6세기 초로 성격이 규정되고, 영산강 유역과 동일한 성격을 보임
- 이처럼 전북 서남부 지역도 6세기 초까지 백제와 구분되는 마한이 존재⁷⁾하고 있었으며, 고창 등 전북의 서남권 역시 후기 마한의 거점지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 기원전 3세기 말 ~ 기원후 2세기 중엽 마한 유적의 대표 유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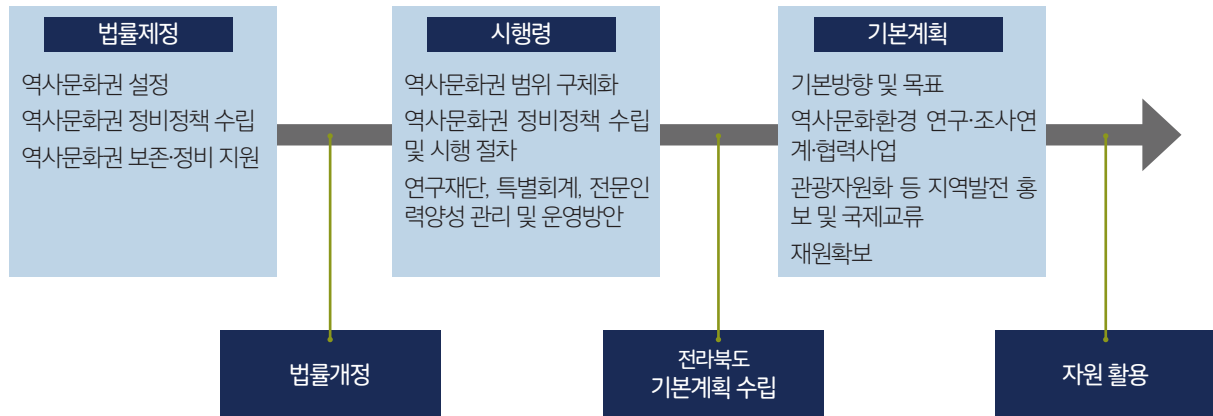
〈그림 3〉 2세기 후엽 ~ 6세기 마한 유적의 대표 유적도

7) 임영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마한문화권'이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 『호남고고학보』 64, 2020, 156쪽

3. 역사문화권 특별법 개정 및 향후 대응전략

◎ 역사문화권 특별법 시행 전 개정 추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은 시행령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6월 10일 시행예정



〈그림 4〉 역사문화권 특별법 추진과정

• 역사문화권 특별법 시행 전 6대문화권 설정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역사문화권 특별법제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여 역사문화권 설정 및 변경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말에 통과
- 시행령 제정 전 역사문화권 지자체 간담회와 전북지역 마한권역 포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법률개정의 필요성 제기
- 잘못된 역사문화권 설정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10일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에 법률 개정 필요

• 마한 권역 포함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전북도 차원에서 마한 권역 포함 방식을 위한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 도내 관련 연구소와 학회인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전북사학회, 호남고고학회 등의 공동 성명서 발의 등
- 향후 공동 대응을 통해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등과 협의하여 마한사 정립 및 역사문화 특별법에 마한 권역의 확장 방안 모색

• 마한 권역 포함을 위한 개정법률(안) 제시

- 역사문화권은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6대 문화권으로 정의
- 6대 문화권 중 마한역사문화권의 개정법률(안) 제시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전북의 마한 권역을 포함하자!

원안	개정안
<p>제2조(정의)</p> <p>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p> <p>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p> <p>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p> <p>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p> <p>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p> <p>마. 마한역사문화권: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p> <p>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p>	<p>제2조(정의)</p> <p>1. ----- ----- ----- ----- ----- -----</p> <p>가. ----- ----- ----- ----- -----</p> <p>나. ----- ----- ----- ----- -----</p> <p>다. ----- ----- ----- ----- -----</p> <p>라. ----- ----- ----- ----- -----</p> <p>마. 마한역사문화권: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p> <p>바. ----- ----- ----- ----- -----</p>

◎ 전북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역사자원 활용방안 모색

•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기존 문화재관련법과 가장 차별적인 요소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음

- 문화재청과 지자체장은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할 것으로 의무사항으로 제시
-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는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과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전북의 선제적 대응 필요
-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전에 전북은 선제적으로 전북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역사문화권에 포함된 지역의 연구·조사는 물론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핵심유적의 복원을 통한 전북의 역사적 자존감 회복

-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시행되면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경상북도는 역사문화권 특별법과 별도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2019년 12월 10일 제정하여 월성 복원·정비, 황룡사 복원·정비,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월정교 복원·정비, 대형고분 재발굴·전시,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쪽샘지구 발굴·정비의 제도적 토대 마련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 디지털 복원사업인 VR·AR 등을 활용한 문화재 디지털 복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의 재발견과 관광객들에게 체험기회 제공
- 전라북도가 포함된 역사문화권별로 고증이 가능한 핵심유적을 설정하여 향후 복원 및 디지털 복원 등을 포함한 문화유적 활용계획 수립



〈그림 5〉 황룡사 디지털 복원

〈표〉 전라북도 문화재 복원(안)

역사권역	복원 문화재(안)
백제역사문화권	백제왕궁리유적지, 미륵사지, 벽골제, 고사부리성
가야역사문화권	가야봉화대, 가야제철유적, 남원 월산리 가야고분군, 장수 삼봉리 산성
마한역사문화권	완주 상운리고분군, 정읍 지사리고분군, 고창 태봉산토성, 고창 봉덕리고분, 군산 산월리고분군

◎ 강원도와 연계한 후삼국 후백제·태봉 역사권역 설정

- 중장기 과제로 후삼국시대의 한국사 연표 등을 위한 후삼국 시대 연구와 문화재 발굴 등을 통한 역사학적 노력 필요
 - 후삼국은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건국 시기 사이를 존재했던 태봉과 후백제가 국호, 연호, 왕명, 연대가 분명한데도, 국가의 역사를 통일된 체계적인 역사기술이 되어 있지 않음
 - 한국사에서 삼국(고구려, 신라, 백제)-통일신라-후삼국(태봉, 후백제)-고려-조선으로 역사가 전개되었음에도 후삼국시대가 불분명⁸⁾
- 후백제의 수도인 전북 전주와 후고구려(태봉)의 수도인 철원이 연계하여 후삼국 시대의 역사문화권 설정 필요
 -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후백제와 후고구려에 대한 역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 제시 필요
 - 현재 전북학연구센터와 강원학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백제-태봉 역사벨트 구축사업을 계기로 후삼국시대를 역사문화권 특별법의 역사권역으로 설정하는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필요
 -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을 포함 시킨 이후 제2차 작업으로 후백제의 역사문화권 설정 포함 또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후삼국시대(후고구려, 태봉)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노력

8) 송화섭, 『한국사에서 후삼국시대의 위상과 그 실상』, 『후백제-태봉 역사벨트 구축세미나』, 전북연구원, 2020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전북의 마한 권역을 포함하자!

<참고문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지역 마한 풍속의 지역전략화 조사연구』,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8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고창 봉덕리 고분군의 가치와 사적 확대지정 방안』,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0

임영진,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과정-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3, 2010

최완규, 「마한성립의 고고학적 일고찰」, 『한국고대사연구』 79, 2015

박순발, 「마한사의 전개와 익산」, 『마한백제문화』 28, 2016

김승옥, 「호남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상호관계」, 『호남고고학보』 63, 2019

임영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마한문화권’이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 『호남고고학보』 64, 2020

김병남, 「백제의 ‘전북지역’ 진출 과정과 추이 변화」, 『전북사학』 85, 2020



ISSUE BRIEFING
2020. 08. 10 Vol. 227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